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6-131

제출년월일 : 2026. 11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의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동 편의 증진 및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
(안 제1조, 제5조, 제8조～제9조)

나. 띄어쓰기 등 구문 정비(안 제9조)

다. 양육 지원 세부 사항 신설
(안 제6조3호 추가, 3호 추가에 따른 기존 조항 4~7호 이동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인구전략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　　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6. 10. 15.~2026. 11. 4.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”을 “「인구전략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21조제1항”을 “「인구전략기본법」 제3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을 위한 교통비 지원

제8조제1항 중 “저출산”을 “저출생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양육지원”을 “양육 지원”으로, “저출산”을 “저출생”으로, “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저출산”을 “저출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,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인구전략기본법」----------.
제5조(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	제5조(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) ------- 「인구전략기본법」 제33조제1항-----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) 구청장은 구민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1.·2. (생 략) <신 설> 3. ~ 6. (생 략)	제6조(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) -----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을 위한 교통비 지원 4. ~ 7. (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
제8조(홍보 및 교육) 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	제8조(홍보 및 교육) ① ---------- 저출생 ----------

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-----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표창)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,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과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. 1.·2. (생 략) 3.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(생 략)	제9조(표창) ① ---------- 양육지원---------- -- 저출생 ---------- ---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저출생 ---------- ---------- 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조례 제6조에 '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 교통비 지원' 조항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비용추계기간: 2027. 1.~2030. 12. (4년)

나. 운영예산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('26.8.31.기준) 활용하여 작성함

- 2027년도는 총 사업대상자 수의 70%로 산정, 이후 매년 5% 증액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7년)	2차년도 (2028년)	3차년도 (2029년)	4차년도 (2030년)	5차년도	합계
세입	○ 구비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○교통비 지급	266,000	281,000	295,000	310,000		1,152,000
	○홍보비	3,000	2,000	2,000	2,000		9,000
	소계(b)	269,000	283,000	297,000	312,000		1,161,000
□ 총 비용(a-b)		-269,000	-283,000	-297,000	-312,000		-1,161,000

4. 재원조달 방안: 전액 구비

5. 덧붙이는 의견: 구체적인 세출은 차후 운영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미래교육국 가족정책과 한아름
연 락 처	02-3153-8933